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27
------	------

2025.06.13.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05월 2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5년 05월 2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5.06.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정상훈)

가.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증진과 지방세 불복민원에 대한 선정 대리인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 대리인 업무 추가
2.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이관 신설
 - 선정 대리인 위촉 요건,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선정 대리인 신청 및
신청결과 통지 등 규정 신설
3. 그 밖의 문구 정비 등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던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출됨.

2. 납세자보호관 제도 현황 및 실적

-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2006년에 도입되어¹⁾ 2018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²⁾되었으며,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보호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음.
-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문제를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나 중지, 절차 개선 등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³⁾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1) 「지방세법」에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2005년 12월 31일에 신설되어 2006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음.
2) 「지방세기본법」은 2017년 12월 26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보호관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이 개정 내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3) 「지방세기본법시행령」 51조의2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 취지를 반영하여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지정하고(현재 법무담당관), 시민의 납세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참고로 지난 2024년을 기준으로 서울시의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등 총 2,73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음.
- 민원 유형별로 고충민원은 63건(52건 인용), 세무조사 연장 및 연기 요청은 6건(4건 인용), 그 밖의 권리보호 4건(4건 인용), 편의시책 관련 민원 2건, 세무상담 2,660건이었으며, 권리보호요청은 접수된 바 없음.

< 2024년 납세자보호관 운영 실적 >

(단위 : 건)

구 분	총 계	납세자 보호 업무					세무 상담
		고충민원	권리 보호요청	세무조사 연장·연기	그 밖의 권리보호	편의시책	
2024	2,735	63 (52)	0 (0)	6 (4)	4 (4)	2	2,660

※ ()안은 인용건수 / 그 밖의 권리보호 :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신청, 징수유예 신청 등

3. 조례안의 개정 사항

- 현재 서울시는 시민의 납세권 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충 민원 처리, 세무 상담 등 다양한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음.
- 한편,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⁴⁾되어 별

4)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9조(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 시장은 영 제 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 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이하

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는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세무·법률 전문가(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를 무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를 지원하는 제도임.

< 선정대리인 개요 >

- ▶ 제도정의 :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 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납세자를 무료로 지원하는 '권리구제 제도'
- ▶ 지원 대상 : 청구세액 2천만 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개인) 소유재산 5억 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법인) 자산총액 5억 원 & 매출액 3억 원 이하
- ▶ 신청 방법 : 시세는 서울시에, 구세는 각 자치구에 신청
시세 자문제도(6개): 서울시 지방소득세, 지방세 주민세, 지방법인세, 지역자원시설세
구세 자문제도(2개): 각 자치구 재산세, 등록면허세
- ▶ 규모 : 총 20명 (2년 간) [2024. 3. 2 ~ 2026. 3. 1]변호사 5명, 공인회계사 4명 등
- ▶ 운영 예산 ('25년 예산안) : 예산 약 10,000천 원
선정대리인 자문 수당: 1건당 50천~150천 원, 연간 진출 25건 × 100천 원

-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선정 대리인 제도는 납세자 보호의 실질적 주체인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와 연계가 다소 부족했으며⁵⁾, 관련 규정이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분산되어 있어 제도 간 일관성 부족 및 운영상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음.⁶⁾
- 더욱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⁷⁾됨에 따라, 선정 대리인 업무가 공식적으로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에 포함되면서, 상위 법령과 현행 조례 간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조속한 조례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임.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5)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서울시의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재무국(세제과)의 업무였으며, 납세자보호관은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에서 담당하였음.

6) 오승규, 「지방세 납세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과제 2022-13, 2022.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4.12.31.개정) >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① 법 제7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⁸⁾

- 이에 서울시는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조항을 기존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이관하고 통합함으로써 제도의 정합성과 운영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개정안 제6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선정대리인 제도를 납세자 권리보호 체계 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는 기존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선정 대리인 운영 관련 조항을 그대로 이관한 것으로, 소유 재산 평가 기준, 위촉 및 해촉 요건, 신청 및 통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아울러 제1조(목적), 제5조제1항제1호(납세자보호관의 자격),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등은 문구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성과 표현의 명확성을 제고한 것임.

8) 개정 2024. 12. 31. 시행 2025.1.1.

< 조례안 개정 세부내용 >

구분	조항번호	개정안
목적	제1조	현행 조례와 동일(단, 문구 일부 정비)
납세자보호관 업무	제6조	선정 대리인 운영 업무 추가
선정 대리인 관련 조항	제23조~제25조 신설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이관하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신청·통지 등 신설
기타 정비사항	제1조	관하여 필요한 → 필요한
	제5조제1항 제1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 서울특별시
	제7조	시 → 서울특별시

- 동 개정조례안은 선정대리인 업무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통합함으로써 두 제도 간의 연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음.
- 특히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장치이므로 관련 규정의 통합과 체계화는 납세자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체계의 통합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며, 제도 간 연계 미흡 및 운영상 비효율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27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 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증진과 지방세 불복 민원에 대한 선정 대리인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 대리인 업무 추가

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이관 신설
- 선정 대리인 위촉 요건,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선정 대리인 신청 및 신청결과 통지 등 규정 신설

다. 그 밖의 문구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제외법령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
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4. 3. ~ 4. 23.)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공도연(☎2133-6688)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6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납세자 권리현장 등”을 “선정 대리인”으로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하고, 제23조

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24조(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7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4항에 해당하여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선정 대리인은 불복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대리인이 없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불복청구(이의신청)일자, 납세자, 선정 대리인, 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이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른다.

제2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납세자 권리현장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행한 선정 대리인의 위촉 등 그 밖의 행위는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과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필요한</u> ----- ----- --.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 ① ----- ----- ----- --.
1.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u>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방세 관련 업무경력이 7년 이상 근무한 4급 또는 5급 공무원	1. <u>서울특별시</u>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5. <u>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의</u>

현행	개정안
5.·6. (생략)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u>신</u> 및 자치구의 세무부서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 6. (생략) 제6장 <u>납세자 권리헌장 등</u> <u><신 설></u> <u><신 설></u>	<u>운영에 관한 사항</u> 6.·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 ----- ---- <u>서울특별시</u> ----- ----- -----. 1. ~ 6. (현행과 같음) 제6장 <u>선정 대리인</u> 제23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u>제62조의2제2항제2호</u> 각 목의 <u>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u> 제24조(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 시장은 영 <u>제62조의2제7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u>

현행	개정안
	<u>배제하여야 한다.</u>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

현행	개정안
	<u>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u> <u>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4항에 해당하여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u> <u>⑥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u> <u>⑦ 선정 대리인은 불복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u> <u>⑧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⑨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 <u>제25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대리인이 없는 과세전적 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시장은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u> <u>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u> <u>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불복청구(이의신청)일</u>

현행	개정안
<신설> 제23조 ~ 제26조 (생략)	자, 납세자, 선정 대리인, 결정 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 다. ⑤ 구청장이 선정 대리인을 선 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62조의2 제6항에 따른다. 제7장 납세자 권리현장 등 제26조 ~ 제29조 (현행 제23조부 터 제26조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 세제과에서 운영하던 선정 대리인 업무를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제출의 순증가 발생 사항 없음

4. 작성자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공도연 주무관(2133-6688)